

[별표 3] <개정 2009.4.21>

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(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)

근거법률	지역 등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·40조의2	산업단지·공장입지유도지구
2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	택지개발예정지구
3. 「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·제11조	전원개발사업구역·예정구역
4. 「유통단지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1호	유통단지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43조	도시계획시설예정지(도시지역 밖 에 한한다)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3항	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
7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	도시개발구역
8.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	보금자리주택지구
9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	경제자유구역
10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	기업도시개발구역
11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	관광지·관광단지
12.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	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